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85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김승원·박홍배·김현정

이원택 • 조계원 • 이건태

박균택・박지원・서영교

권칠승·박은정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영상녹화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신문하기 위해 일부러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4조

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의2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제2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
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화) ①
녹화할 수 <u>있다</u> . 이 경우 미리	<u>있으며,</u> 피의자 또는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
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화를 하여야 한다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
	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
	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